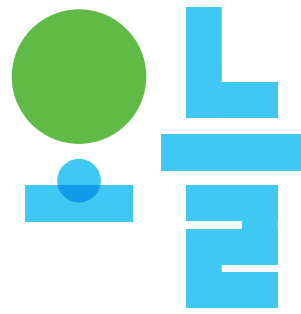


경남탄소중립

경상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



「경상남도 탄소중립 오늘」은 전 세계적인 이슈인 이상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정책 동향, 기술 및 산업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고, 경남도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현안 등을 분석하여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와 탄소중립

- 01 강조되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할 및 책임
- 02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 03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의 한계

2023.
Vol 02

지자체와 탄소중립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김소희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그간의 정부주도의 하향식 정책추진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다양한 지자체의 역할 중 법률로써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일이다. 광역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로드맵, 기후변화대응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계획 수립의 경험이 있으나, 다수의 기초지자체는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정계획으로써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방안을 살펴보고,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의 한계점 및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1. 강조되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할 및 책임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20.12.07)에 이어 추진전략 중 하나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이 채택됨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 전체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계획 및 이행하는 직접적인 사업주체로 역할이 확대된 것이다.

2021년 5월에 열린 P4G 서울정상회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 세션에서는 전국 243개의 모든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는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상향식(Bottom-up) 기후행동의 중요성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가치로 선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세계 21개 글로벌 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동맹(Carbon Neutral City Alliance)을 결성하는 등 지역중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한국환경공단).

2021년 9월 제정·공포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동일하게 제시하며 지자체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였다. 기존에 광역지자체 수준까지 수립하던 기본계획을 기초지자체까지 추가하여

모두 수립하도록 하였고,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지자체는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권한 및 역할이 새롭게 부여되며 법률에 기반한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할 및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표 1> 탄소중립기본법 내 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

구분	검 토 의 견
목표설정	• (국가 비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40%만큼 감축
관련 계획수립	• (탄소중립 시·도계획/시·군·구계획의 수립) 시·도 및 시·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년임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시·도 및 시·군·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 • 매년 각각의 계획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한 결과보고서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시·도)과 시·도지사(시·군·구)에게 제출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 • 기후위기적응대책의 경우 시·군·구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
주요 시책 및 수단	•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 •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인 탄소중립도시 지정가능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지자체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정의로운 전환 추진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운영
이행체계 및 기반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국가와 지자체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이 가능하고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음 •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지자체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지자체 계획수립 및 시행 지원등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운영 •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지자체는 조례에 의해 지역 기후대응기금 설치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과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운영
기타	•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기후위기로 인해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지역기후위기대응사업 시행

자료) 탄소중립을 향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 강화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2.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1)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지자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체계 중 하나로 국가 전체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지자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표 2> 국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계획의 범위

구분	계획의 범위
국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 → 20년 계획기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국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지자체기본계획) → 10년 계획기간, 5년마다 수립·시행

자료) 탄소중립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지자체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자체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방안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 시·도 기본계획은 아래의 포함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표 3>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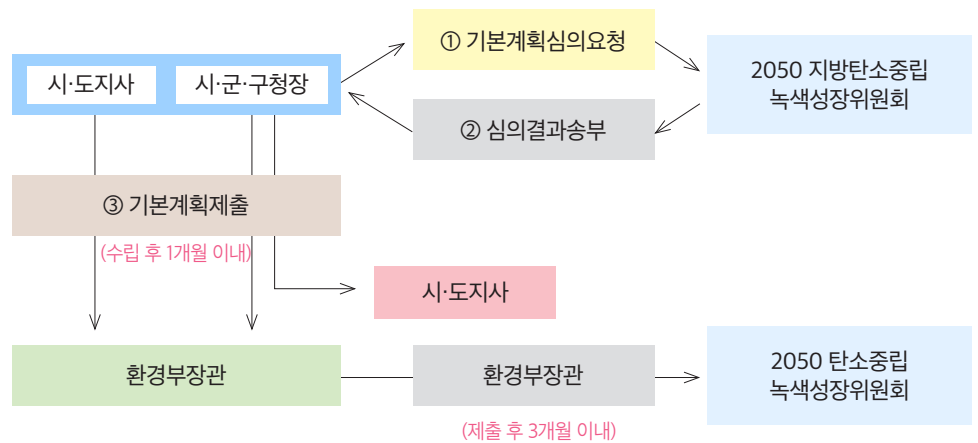
구분	국가 기본계획	지자체 기본계획
포함 사항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 · 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 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 · 예측 · 영향 · 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 ·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 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 연도별 이행 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 · 예측 · 영향 · 취약성평가 및 재난 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 · 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 · 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탄소중립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지자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2050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환경부장관과 더불어 관할 시·도지사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데, 이는 기초지자체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의 점검 및 검토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닌 단 순히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 각각 제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방위원회 심의 과정은 기본법 제 22조에 따라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 환경부(2023),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1>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체계도

<표 4> 탄소중립기본법상 주체별 역할

구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역할	근거
지자체	시·도지사	- 5년마다 시·도 계획 수립 - 시·도 계획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 완료된 시·도계획 제출(→ 환경부장관)	제11조 제1항, 제3항
	시·군·구청장	- 5년마다 시·군·구계획 수립 - 시·군·구계획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 완료된 시·군·구계획 제출(→ 관할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제12조 제1항, 제3항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관할 지자체 기본계획 심의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환경부		- 지자체 계획 종합 제출(→ 위원회) - 지자체 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시행령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지자체(시·도, 시·군·구) 계획 종합 접수 - 지자체(시·도, 시·군·구) 계획 검토결과 통보(→지자체장)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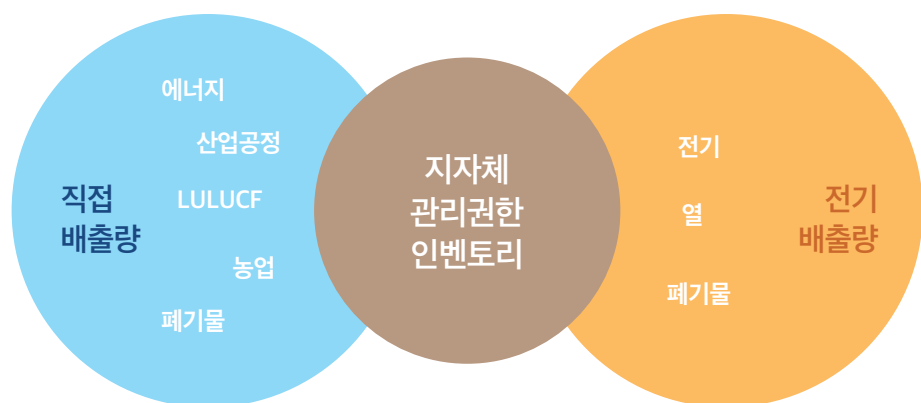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2023),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

세부적인 지자체 기본계획은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2023.05, 환경부)'을 준용하여 수립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국가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 계획 수립 시 국가 목표와의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설정해야 하고, 2030년의 중장기 감축목표와 최종 계획연도의 감축목표(광역시·지자체 2033년, 기초지자체 2034년)를 모두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마련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GIR)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지역주도적 탄소중립의 이행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역의 총배출량이 아닌 '지자체 관리 권한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지자체 관리 권한 인벤토리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제공하는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전한 및 산업 등의 국가 관리권한 배출량을 제외하고 지자체 관리권한이 있는 비산업부문(가정, 상업·공공, 도로수송, 농축산 폐기물 등)의 배출량만으로 재구성한 자료를 말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정, 상업, 공공부문의 에너지 사용(화석연료 및 전력, 열)에 의한 배출량과 도로수송 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의한 배출량, 농·축산부문 배출량, 폐기물 발생에 의한 배출량을 지역에서 관리 가능한 배출량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GIR에서 제공받은 인벤토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의 지자체 관리권한 부문별 연계표를 활용하여 지자체 관리권한 인벤토리로 재구성하여 활용해야 한다.



<그림 2> 지자체 관리권한 인벤토리의 범위

<표 5> 지자체 권리권한 인벤토리 분류

구분		직접 배출량	간접 배출량
에너지	건물	상업/공공	전력, 열
		가정	전력, 열
	수송	도로수송	전력
	농업	장내발효, 가축분뇨처리, 벼재배, 농경지토양, 석회시용, 요소시용	X
	흡수원	LULUCF 전체	X
비에너지	폐기물	X	폐기물 전체 발생량

자료) 환경부(2023),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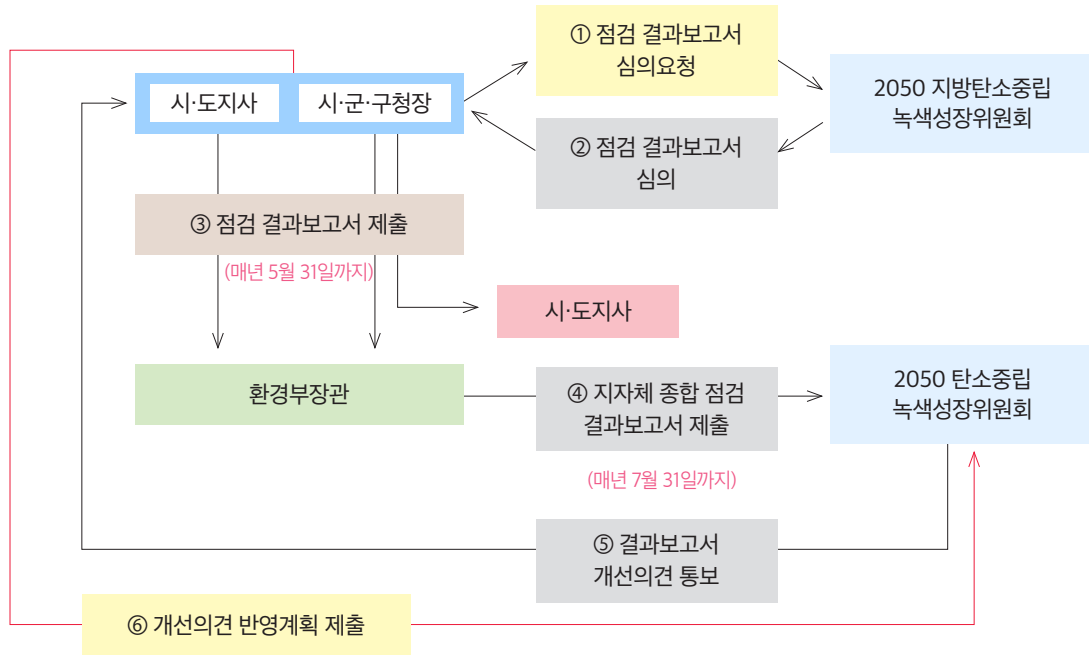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기준연도(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목표연도(2030년 및 최종계획연도) 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흡수 및 제거량을 뺀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감축사업의 감축잠재량 산정 시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의 감축원단위 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공단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없을 경우 명확한 출처 확인이 가능한 감축원단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연도별 추진상황에 대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의무적인 이행점검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점검결과보고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와 마찬가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해야 하며, 지방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생략가능하다.



자료) 환경부(2023),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지자체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체계도

<표 6> 탄소중립기본법상 주체별 역할

구분	구분	추진상황 점검 관련 역할	근거
지자체	시·도지사	- 매년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점검 결과보고서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 완료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환경부장관) - 위원회의 개선의견 반영	제13조 제2항, 제3항
	시·군·구청장	- 매년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점검 결과보고서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 완료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관할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 위원회의 개선의견 반영	제13조 제2항, 제3항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관할 지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심의	제13조 제2항
환경부		- 지자체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지자체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위원회) - 지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3조 제2항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종합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제13조 제3항

자료) 환경부(2023),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

추진상황 점검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정량사업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이 불가능한 정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정량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목표 대비 실적 또는 과제이행 실적(사업실적/사업목표)을 적용하며, 정성사업은 과제이행실적(사업실적/사업목표) 또는 예산 집행실적(집행예산/계획예산)을 적용한다. 추진상황 점검 결과로 나타난 미흡 및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고 이를 차년도 과제 추진 시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탄소중립 정책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사업으로 구성되므로 정책의 이행 및 점검과정에서 주관 부서와 소관부서의 협조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책 이행 및 점검을 위한 역할과 추진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담조직체계를 구성하는 등의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를 마련해야 사업의 이행과 점검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의 한계

법률에 의해 전국 243개 지자체는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공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간 역량과 인프라 차이로 인해 탄소중립 전환 속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며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며 자율성을 부여하였지만, 정부 주도의 하향적 정책 구조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률적인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과제가 주어지며 탄소중립 관련 행정경험이 없음과 단계인 다수의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역의 배출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이해하는데도 버거운 실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배출경로를 설정하고 지역의 감축잠재량을 분석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데이터의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발 및 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 2030 국가 NDC 상의 비산업부문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수립하고 지자체 감축목표율이 국가 비산업부문 감축목표율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 사유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환경부는 지역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기초지자체의 사업들을 살펴봤을 때 정부의 감축목표에 비해 낮은 감축목표가 수립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권한 부재 및 사업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며, 기초데이터와 일관된 보고체계 부족으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가시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이다(경기연구원).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광역과 기초지자체 모두 각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광역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후 기초지자체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기초지자체의 감축사업을 광역지자체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리의 공동목표는 탄소중립 달성이다. 기초지자체의 개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광역-기초지자체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였을 때 탄소중립 이행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국가로 상향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하향식 수립 절차는 결국 중앙 및 상위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지역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시 상향식 수립절차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 덧붙여 지역의 사업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므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기금 지원 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기본계획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력은 한계가 있다. 자원확보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환경부(2023),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탄소중립을 향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 강화방안
한국환경공단(2023), 4.26 보도자료, 「지자체 탄소중립ACT센터」 신설
경기연구원(2021),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